

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내역

2022-03-25

변경전	변경후	비고
(신설)	개정 2022.03.25	최신 개정일 반영
<p>□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</p> <p>- 빌포스트 : 월간 거래내역 발송, 자산운용보고서 발송, 펀드 실질수익률보고서 발송 등 - KTB신용정보 : 채권 추심</p>	<p>□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</p> <p>- 빌포스트 : 월간 거래내역 발송, 자산운용보고서 발송, 펀드 실질수익률보고서 발송 등 - 다올신용정보 : 채권 추심</p>	사명 변경
<p>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color: red;">6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- 고객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 당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7. 그 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은 아래 “개인(신용)정보처리 고객권리 안내문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고객권리 안내문</p> </div>	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및 고객권리 안내문 항목 신설